「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 질의 답변

□ 추가 질의답변

※ 질의사항은 필요시 요점 위주로 각색하였음.(2022. 9. 8.)

연번	지침서		질의	답변
	쪽	조항		
1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외투기업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시, 10년간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제자유청 담당자 분께서는 본 건 사업(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라는 답변을 주셨고 이에 본 건 사업에서도 외투기업이 1천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 하기 감면율과 동일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혜택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례 등 법령에 의한 사항입니다. 조세감면 혜택의 대상 여부는 투자요건, 대상사업, 투자금액 등 검토에 따라 해당여부를 관할 부처 및 해당 주무관청 등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공모단계에서 해당여부를 확인드리기 어렵습니다.
2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외투기업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시, 10년간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 사업에서도 외투기업이 1천만불 이상 집합투자기구(PFV, Fund)를 통해 투자할 경우 하기 감면율과 동일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추가 질의답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 컨소시엄명을 사업명 및 컨셉과 같이 유사하게 제안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명의 경우 컨셉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LOC을 받을 당시와 사업 제안서 준비 중의 단계에서 컨소시엄 명이 변경될 확률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LOC를 받을 때는 컨소시엄명을 (가칭)으로 받을 수 있는지 (예시 (가칭)xxxx 컨소시엄) 질의드립니다. 만일 가칭명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준비 단계에서 컨소시엄 명이 바뀌었을 때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보완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 LOC는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컨소시엄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41		• 외국인 직접투자(FDI) 계획을 제출시 법인 소개와 구체적인 책임, 권한, 역할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양식이 있는지 여부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 사업신청자가 외국인 직접투자 법인 소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작성하시어 자율양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45		• 핵심테넌트 유치 계획에서 LOC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LOC의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와 LOC양식이 없다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 사업신청자가 LOC 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작성하시어 자율양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금일 추가 질의답변 게시를 기점으로 '서면질의' 접수를 마감합니다.